

# 재단법인 사랑글로벌아카데미 정관

제정 2020. 1. 18.

개정 2020. 8. 15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 법인의 명칭은 ‘재단법인 사랑글로벌아카데미(Sarang Global Academy)’ 라 한다. 영문으로는 ‘Sarang Global Academy Foundation’로 표기한다.

### 제2조 (주사무소 및 분사무소)

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(서초동)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### 제3조 (목적)

본 법인은 국가발전과 글로벌 사회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기독교 신앙과 이타적 사랑에 바탕을 둔 인재양성과 학술 연구, 문화예술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4조 (사업)

- ①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  1. 기독교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과정 및 세미나, 컨퍼런스 운영
  2. 해외 유명인사 초빙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  3. 글로벌 다음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, 체험활동
  4. 글로벌 기독교 교육 기관과의 교류, 제휴

5. 디지털 변화에 부응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및 자료실의 운영
6. 기독교 문화예술 연구, 전시, 플랫폼 기반 공유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된 도서출판업
2.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이버 강의 콘텐츠 판매
3. 기타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

③ 제 2항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#### 제5조 (수혜평등의 원칙)

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 (신설 2020. 8.15.)

#### 제6조 (선거운동의 금지)

법인명의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. (신설 2020. 8.15.)

## 제 2 장 재산과 회계

#### 제7조 (재산의 구분)

-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2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승인한 재산
  3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- ③ 본 법인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별첨과 같다.

## **제8조 (재산의 관리)**

-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, 의무부채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하며,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취득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,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 **제9조 (경비)**
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## **제10조 (기부금)**

- ①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(신설 2020. 8.15.)
-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 (신설 2020. 8.15.)
- ③ 기부금의 모집 활용 및 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(신설 2020. 8.15.)

## **제11조 (회계의 구분)**

-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## **제12조 (예산 외의 채무부담)**

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**제13조 (잉여금의 처리)**

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## **제14조 (회계연도)**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**제15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**
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1. 이 법인의 설립자
  2. 이 법인의 임원
 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## **제16조 (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)**

-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 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-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
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3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,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.

## 제 3 장 임 원

**제17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이사 7인 이상 11인 이하(이사장 1인 포함)
- ② 감사 2인

**제18조 (상임이사)**

-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의 역할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**제19조 (임원의 임기)**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,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**제20조 (임원의 선임방법)**

-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 또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다.
-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

**제21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)**

-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**제22조 (이사장과 이사의 직무)**

-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#### 제23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# 제24조 (감사의 직무)

-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 1.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  2.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, 날인하는 일
  3. 본 법인의 의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4.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  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②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25조 (임원의 보수 제한 등)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## 제 4 장 이 사 회

### 제26조 (이사회의 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### 제27조 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이내에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-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### 제28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21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### 제29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 (개정 2020. 8.15.)

- ①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
-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⑤ 사업에 관한 사항
-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⑦ 기부금의 모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⑧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 제30조 (의결 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, 정관변경은 제38조에 의거 의결한다. (개정 2020. 8.15.)

### 제31조 (의결제척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# 제32조 (이사회 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# 제33조 (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## 제 5 장 사무조직 및 운영

### 제34조 (사무국)

-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6 장 해 산

### 제35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36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 (개정 2020. 8.15.)

### 제37조 (청산인)

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
## 제 7 장 보 칙

### 제38조 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39조 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삭제 (2020. 8.15.)

## 부 칙<2020.8.15.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